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53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9.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5. 9.
다. 상정·의결일자 : 2025. 5. 22.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사항을 구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에 예산 확보 노력을 기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 필수 조례 위임사항 반영
 - 조례 제정 목적에 상위법 위임조항 추가(안 제1조)
 - 교육대상자별 교육사항 구체화(안 제18조)
- 2) 예산 확보 노력 대상에 바우처 택시 추가(안 제19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 2)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기확보
- 3) 합 의: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복지지원과-11090(2025. 3. 20.)]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 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제2항제2호에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내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자수가 급증하여 현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중증보행장애인수 기준으로 산정)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지연의 문제가 심각함. 현 상황에서 조례에서 이용대상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경우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해야만 하는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짐에 따라 불수용.
<input type="checkbox"/> 제18조(교육)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별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제18조(교육)제2항에 ‘ 또한,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는 제18조(교육) 제1항제2호에 기 반영됨. ▪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2항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만 정하고 있어 그 외의 “성인지교육“을 받도록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법률 위임 없이 교육의무를 부과 되는 것이 되어 불수용.

4) 기 타

-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543호
 - . 예고기간: 2025. 3. 20. ~ 4. 9.(20일간)
 - . 예고결과: 의견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비용추계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1조) 목적
 - 위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추가)함.
- (안 제18조) 교육
 - 안 제1항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대상자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안 제2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2025. 1.17.)에 따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추가함.
- (안 제19조) 예산의 확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확보 노력 대상에 특별교통수단 외 바우처 택시를 추가함.

○ 종합검토 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5. 22.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